



중 국



중국 증권선물시장 관련법 입법 동향

정보신청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시장감독과

I. 중국 증권 관련법 입법 동향

1. 배경

증권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체제의 산물로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에서 증권시장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 국유기업의 소유권 개혁의 진행과 함께 중국 증권시장은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적 장치가 요구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하 ‘증권법’이라 한다)」이 1998년 12월 29일 제 9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6차회의에서 통과,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증권법은 1995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주요 입법 연혁

(1) 구 증권법의 주요 내용

증권법은 증권거래 및 증권시장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조에서 증권법의 입법취지를 “증권의 발행과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공이익의

유지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구성은 총칙, 증권 발행, 증권교역, 상장회사의 인수,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 결정기구, 증권관련 업무기구, 증권협회, 증권감독관리기구, 법률책임, 부칙의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증권법의 개정

시장경제의 발전과 증권시장의 성숙과 함께 새로운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증권법 개정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에는 기존 증권법을 개정하였다. 그 개정된 주요내용은 상장회사의 자격 심사 강화, 증권회사 감독관리 강화, 소액투자자 권익보호, 위법행위 엄벌, 자본시장의 법제강화 및 증권관리 감독제도 등으로 중국 증권시장의 성숙과 함께 필요한 규정 및 제한들을 추가한 것이다.

(3) 증권선물거래 관련 규정

구 증권법 제35조에서는 “증권의 거래는 현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권선물거래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증권시장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발전은 ‘실질적인 선물거

래'의 형태를 발생시켰고, 이에 발맞춰 새로 개정된 증권법에서는 이에 대해 기존 제35조의 규정을 제42조 “증권 거래는 현물과 국무원이 정한 기타 방식에 의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선물 거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3. 선물거래 관리조례(期貨交易管理條例)의 제정

증권법의 개정과 함께 선물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식적인 규정은 미비하였다. 증권법 개정 이후 「선물거래 관리에 대한 임시조례(期貨交易管理暫行條例)」가 시행되었고, 이 임시조례를 대체하는 관리조례가 2007년 2월 7일 국무원 제 168차 회의를 거쳐, 2007년 3월 16일 「선물거래 관리조례(期貨交易管理條例)」; 이하 ‘관리조례’라 한다」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됨으로써 선물거래에 대한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II. 관리조례의 주요 내용

1. 개 관

관리조례는 국무원령¹⁾의 형식으로 공포되었으며 2007년 4월 15일자로 발효된다. 주요 구성은 총칙,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선물거래의 기본원칙, 선물업협회, 관리감독, 법률책임, 부칙 총 8장, 9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 叶林, 《证券法》p.165.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5.

2) 国务院令 489号.

2. 주요 내용

(1) 총 칙

총칙편에서는 관리조례의 입법취지, 적용범위, 기본원칙, 감독의 주체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관리조례 제1조는 “선물시장의 거래를 규범화하고, 선물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선물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며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하고 선물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그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는 “상품과 금융선물계약을 포함한 모든 선물거래 및 관련활동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고 명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3조는 “선물거래는 공개, 공평, 공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기나 밀실거래, 선물가격의 인위적 조작 등의 위법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하여 선물거래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와 제5조는 선물시장에 관한 규정으로 “선물거래는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된 거래소와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장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제4조), 국무원이 선물거래관리기구 및 시장에 대해 포괄적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제5조).

(2) 선물거래소

제2장은 선물거래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물거래소는 국무원의 비준을 반드시 거칠 것(제6조), 선물거래소

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관련 민사책임을 질 것(제7조), 선물거래소 회원관리규정(제8조, 제9조), 선물거래소의 직무(제10조), 선물거래소의 위험관리 제도 및 긴급 조치사항(제11조, 제12조), 선물거래소 업무 중 공무원 선물관리감독 기구의 비준사항(제13조), 선물거래소 수익의 사용(제14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3) 선물회사

제3장에서는 선물회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선물회사의 설립, 등기 및 관련 공무원 비준의무(제15조), 선물회사의 조건(제16조), 선물회사의 허가제 운영(제17조), 선물회사의 업무 중 공무원 및 관련기구의 비준사항(제19조, 제20조), '허가법'과 관련한 허가 취득사항(제21조), 선물회사의 정보공개의무(제22조), 선물 컨설팅 및 중개 업무에 대한 자격 및 관리사항(제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선물회사 설립조건의 규칙을 살펴보면 회사법의 회사 설립규정을 만족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 ① 등록자본이 인민폐 3천만 위안 이상일 것
- ② 이사, 감사, 고위 관리직 임원 및 직원이 관련 자격을 갖출 것
- ③ 법률 및 관련 행정법규에 부합하는 회사 정관을 가질 것
- ④ 주요 이사나 실질 지배인(控制人)이 영업능력을 갖추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최근 3년 내 중대한 위법사실이 없을 것
- ⑤ 영업장 기준 및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 ⑥ 위험관리 체계와 내부제어 제도를 갖출 것
- ⑦ 공무원 선물거래 관리감독기구의 기타 조건을 만족시킬 것

(4) 선물거래의 기본원칙

제4장은 선물거래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한 장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물거래의 주체는 선물거래소 회원으로 제한하고(제24조), 위탁 거래의 관련규정(제25조, 제26조), 선물회사의 정보공개의무(제27조, 제28조, 제35조), 보증금 관련규정(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회원계좌관리(제30조, 제31조), 회계관리규정(제34조, 제37조), 선물의 인수(제39조), 위약책임(제40조, 제41조), 지급관련규정(제41조, 제42조), 공무원 및 기타 관련법규의 준수의무(제45조, 제46조) 등 선물거래 전반에 대해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5) 선물업협회

선물업협회는 선물회사들의 자율적 규제를 위한 기구로 법인의 형태를 가진다(제47조). 선물업 협회 전체회의는 선물업협회의 최고 권력 기구로서 정관의 제정을 할 수 있고(제48조),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를 설립한다. 관리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협회의 주요 직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선물관련 법규 및 정책결정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 및 회원 조직화 업무
- ② 업계의 자율규칙을 제정하고, 회원들을 감독, 조사하며 자율규칙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처분업무
- ③ 선물업 회원의 자격인증, 관리 및 회원자격 취소 업무
- ④ 고객과 회원 및 회원 사이의 분쟁을 접수하고 이를 중재하는 업무
- ⑤ 회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공무원 선물거래 관리감독기구에 회원들의 건의 및 요구를 반영

- ⑥ 업계 회원들 사이의 교류 증진
- ⑦ 선물업 발전을 위해 회원들을 조직하고 관련 연구 업무를 진행
- ⑧ 선물업협회 정관이 정하는 기타 업무

(6) 관리 감독

관리규정 제50조는 국무원 선물거래 관리감독기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선물시장 관리에 대한 관련 규칙, 규정들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심사 및 비준권을 행사
- ② 상품의 등록, 거래, 지급, 인수 등 선물거래 전반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 ③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 경영 단위, 선물회사가 아닌 지분회원, 선물 보증금 안전관리 기구, 선물 보증금 관리 은행, 관련 창고 시설 등 시장 및 선물거래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단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진행
- ④ 선물시장의 자격조건과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
- ⑤ 선물거래의 정보공개 여부를 관리, 감독
- ⑥ 선물업 협회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
- ⑦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 및 처분
- ⑧ 선물시장 관리, 감독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을 전개
- ⑨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직무

제6장은 또한 국무원 선물거래 관리감독기구가 취할 수 있는 조사권한의 범위 및 관련 업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제51조~제53조), 위험 발생시 관리기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제59조, 제60조) 등 국무원 선물거래 관리감독기구의 감독대상, 범위, 조사권한, 관련조치 등에 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7) 법률책임 및 부칙

제7장의 법률책임 편은 관리조례에서 금지하는 사항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처분의 내용도 벌금의 범위 및 행정처분의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다.

제8장은 부칙으로 본 관리조례에 사용된 용어들을 정리하고(제85조), 본 조례의 발효 등 기타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III. 평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주창하면서 기본적인 자본주의적 제도들을 흡수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의 흐름인 법제화 진행에 따라 사회 전반 시스템의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본시장, 좁게는 증권시장의 발전과 안정은 비단 중국의 외자유치에 핵심적인 통로가 될 뿐 아니라, 국유기업의 소유권 개혁에 관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초기상태에 머물러 있던 중국의 증권시장은 개혁개방 이후 차츰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짧은 시간내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지속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관련 법규도 현재까지는 회사법, 증권법 등의 기본적인 규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임시조례를 통하여 증권시장의 운용과 규제를 실험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식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하여 증권시장을 운용하는 본격적인 케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관리조례의 제정은 이러한 흐름의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 인 식

(중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